

## 손해배상 청구소송

|       |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소송종류  | 민사소송  | 법 원 명 | 대법원              |
| 사건번호  | 2018다○○○○○○○  | 사건유형  | 손해배상             |
| 원 고   | 주식회사◇◇◇◇◇◇◇◇  | 피 고   | 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 외1 |
| 판결선고일 | 2018. 5. 15.  | 비 고   |                  |
| 사건개요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원고는 1992년부터 ●●체라는 이름으로 총 420개의 서체파일을 개발한 회사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서체파일 소스코드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제작된 표현물이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판시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제작한 서체파일은 지적재산권이 인정된다 주장함.</li> <li>- □□초 교직원들은 원고가 제작한 서체를 불법 다운로드 받아 사용(사례 8건)하여 원고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고 이에 원고는 저작권법 제125조제2항에 의거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액 배상을 청구하라며 소를 제기하였음.</li> </ul>  |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주 문   | <p>&lt;3심 판결주문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</li> <li>2.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 ∇∇∇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가, 원고와 피고 인천광역시 사이의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.</li> </ol> <p>&lt;1심 판결주문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피고 인천광역시는 원고에게 1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14.6.6.부터 2017.3.8.까지는 연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</li> <li>2. 원고와 피고 인천광역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∇∇∇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.</li> <li>3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인천광역시 사이에 생긴 부분 중 4/5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 인천광역시가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 ∇∇∇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.</li> <li>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</li> </ol> <p>&lt;2심 판결주문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원고 및 피고 인천광역시의 항소를 기각한다.</li> <li>2. 원고와 피고 ∇∇∇ 사이에 생긴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 인천광역시 사이에 생긴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</li> </ol> |       |            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|--|
|                    | <p>3.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 취지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.</p> <p>피고 인천광역시는 원고에게 금1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.7.21.부터 2017.3.8.까지는 연 5%의 그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</p>  |
| <p><b>판결이유</b>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서체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(저작권법 제2조제16호)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.(대법원2001.6.29. 선고99다23246판결) 이 사건 서체파일들이 설치된 컴퓨터에서 이 사건 문서들에 원고의 허락 없이 복제하여 원고의 이 사건 서체파일들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사건 문서들에 이 사건 서체파일들이 사용된 것이 명백하다고 보인다.</li> <li>- 저작권법 제125조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같은 법 제126조 규정에 의하여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, 이 사건 학교 교사들이 다운로드하여 복제한 이 사건 서체파일들이 8개에 불과한 점. 이 사건 서체파일들을 이용한 별지 침해사례도 9회에 그친 점. 이 사건 서체파일들이 한 문장 정도 사용되는 것에 그치거나, 빈칸에만 사용되기도 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항을 종합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금1,000,000원으로 산정한다.</li> </ul> |